

서울캠퍼스 65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

회차	정기 25차	일자	2023.09.04 18:30	장소	총학생회실(107관 208호)	
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	--

0 성원 점검

간호대학	경영경제대학	사범대학	사회과학대학	약학대학	예술대학	의과대학
0	0	X	0	X	0	X
인문대학	자연과학대학	통일공대	동아리연합회	총학생회장	부총학생회장	계
0	0	0	X	О	0	9/13

1 보고

	-9/9 에피오네 예정				
간호대학	-9/14 단학대회 예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논의 중				
	-9/5 개강인사 예정				
경영경제대학	-9/5 학술제 최종 PT 예정				
	-9/13~15 경영경제대학 축제				
사범대학	· ·				
1 μ " 1	-개강이벤트 업로드 완료 및 진행 중				
	- '가을엔 사과제' 사전 이벤트 진행 중 및 제휴 안내글 업로드 완료, 메인 포스터 공				
사회과학대학	개				
	-불법카메라 탐지 전수조사 완료				
	-공용공간 멀티탭 설치 완료				
	-사물함 철거 및 신규 신청 진행 중				
	-9/11부터 2학기 대여 및 상주사업 예정				
약학대학					
	-불법카메라 탐지 전수조사 완료				
예술대학	-개강맞이 연극학과 방문 완료 및 다른 단위 추후 방문 예정				
	-9/16 체육대회 준비 중				
의과대학	·				
	-8월 29~30일 인문대 운영위원회 LT				
시 교 레칭	-2학기 가을농활 수요조사 완료				
인문대학	-대동제 메인 포스터 공개				
	-인문대학 동아리 모집 공고 완료				
	-불법카메라 탐지 전수조사 완료				
	-9/1 개강인사말 업로드 완료				
자연과학대학	-9/21~22 체육대회 진행 예정				
	-9/21 이스포츠 대회 예정				
	-9월 둘째주 단학대회 예정				
	-9/1부터 대여 상주 사업 진행 중				
	-자치공간 개방 완료				
	-불법카메라 탐지 전수조사 완료				
통일공대	-전과생, 편입생, 복전생 카페 개설 완료				
	-9/5 개강이벤트 예정				
	-9/6부터 공대컵 진행				
	-단학대회 안건 논의 중				
동아리연합회					

2 보고 안건

	- 중앙집행위원장단: 9/5 101관 앞에서 총학생회 개강인사 진행 예정, 가을문화제 총학생회
	부스 운영 예정
	- 교육자치국: 2차 학사정기협의체 완료. D학점 의무부과제 폐지 절차 예정, 학기별 석차
	공개, GPA 환산식 개정 진행 예정
중앙집행위원회	- 연대사업국: 법무법인 혜율과 함께 법률/세무 관련 특강 10/10 진행 예정
	- 일상사업국: 중앙운영위원회와 함께 23-2학기 불법카메라 탐지 전수조사 완료, 십시일생
	정기총회 참석 완료. 우수 학교로 입상, 2학기 대여사업 진행 중
	- 전략정책국: 달려 실수요조사 진행 중, 2학기 다국어 번역팀 구성 완료
	- 회계사무국: 8월 회계내역 및 증빙서 중대중심 업로드 완료
	- 문화위원회: 9/4 가을문화제 공연 오디션 진행
	- 학생복지위원회: 금일부터 2학기 의혈지킴이 활동 시작, 한가위 귀향버스 안내글 업로드
2 -1 41 41 -1	완료
산하위원회	- 학생인권위원회: 8/2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여름포럼 중간 발표 참여 완료, 2학기 인권교
	육 기획 중
	- 졸업준비위원회: 2학기 정장대여 사업 재개, 2024년 졸업자 졸업앨범 촬영 예정
기타	-
, ,	

3 논의 안건

- 1. 23-1학기 예산자치제 지원금 회계 감사
- 1) NstopO
- -2023-1학기 예산자치제 441,250원 지원
- -논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이 규정에 맞게 예산자치제 지원금 모두 소진한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지원

2) 러버쏠

- -2023-1학기 예산자치제 300.000원 지원
- -논의 결과 : 사전 제출한 지워 서류와 변동 없이 지출 확인 및 잔액 150,000워 반환 요청

3) 소름

- -2023-1학기 예산자치제 490,000원 지원
- -결제 후 지원금 이체 건의 경우, 1학기 예산자치제 대상 기간이 1학기와 여름학기임으로 지원금 수령 이전의 항목이라도 인정 가능
- -논의 결과 : 홍보물 관련한 거래관계자 불분명으로 거래관계자임이 증빙 가능하며 인증 서류에 해당되는 형식 의 추가 증빙 자료 재제출 요청

4) 청룡

-2023-1학기 예산자치제 500.000워 지원

[논의 내용]

사과대: 대회 참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, 대회 인증의 경우 카페글인 캡쳐한 것으로 보임. 예금주가 거래관계 자임을 명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혹은 해당 카페 게시글이 주최 측의 게시글 임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 필요

총 : 증빙 자료를 보면 충분히 증빙 가능함

사과대 : 극단적인 예시로 카페글을 위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함. 또한 회계 자료가 규정과의 부합 여부는 단위의 책임으로, 중앙운영위원회가 해야하는 것이 아님

부총 : 회계 감사를 통한 피드백 또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책임임

통일공대 : 타학교 학생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.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함

사과대 : 해당 증빙 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 요청

-논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이 규정에 맞게 예산자치제 지원금 모두 소진한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지원

5) 청룡합창단

- -2023-1학기 예산자치제 55,220원 지원
- -논의 결과 : 단순 주문 내역만 존재하여 거래관계자임이 증빙 가능하며 인증 서류에 해당되는 형식의 추가 증빙 자료 재제출 요청

6) 청우회

- -2023-1학기 예산자치제 450,000원 지원
- -논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이 규정에 맞게 예산자치제 지원금 모두 소진한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지원

7) 흑룡

-2023-1학기 예산자치제 300,000원 지원

-논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이 규정에 맞게 예산자치제 지워금 모두 소진한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지원

2.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안건 논의

[총학생회 회칙 개정 관련 논의]

1) 위임장 관련의 건 : 특정 학년을 대표하는 대표가 다른 학년에게 해당 학년의 대표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경우가 존재함.

-통일공대 : 회칙화 되어있음.

-인문대 :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, 긍정적임.

-사과대 : 단과대 규정으로 제정하거나. 총학생회칙으로 제정화라는 의견이 존재

의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, 사회과학대학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갈 듯함

-총 : 위임 범위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함. 단위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위별 개정 혹은 위임

을 허락하는 상급단위의 대표자가 회칙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회칙을 개정하지 않는 것을 제안드림

-간호대 : 회칙으로 해당 학년으로 규정 되어있음

-경경대, 자연과학대 : 따로 명시된 것은 없음

> 기존안대로 유지

2) 징계자의 피선거권 제한의 건

[논의 내용]

- -사과대 : 징계의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후보자 등록 시 필히 제출할 수 있도록 회칙화할 것을 제안드림
- -총 : 회칙으로 규정하기보다 당해 연도의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나을듯함
- -사과대 : 징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적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과정은 아님.
- -총 : 징계 이력을 회칙화 하여 의무 시행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함.
- -사과대 : 징계를 제외한 개인정보의 경우 마스킹 처리 가능하며 징계 사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선거 출마 희망자의 기본권 제한일 수 있음. 규정에 명시되어있다면 예측 가능성 존재
- -총 :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후보자가 원치 않음이야말로 선거 출마 희망자의 기본권 제한이 아닌가.
- -사과대 : 학적부의 징계 제외한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요구
- -총 : 현재 다른 중앙운영위원은 해당 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임. 필요하다면 본인 소속 단위 운영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 후 적용하여 좋은 선례가 된다면 총학생회를 포함한 다른 단위에서도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함.

> 현행 유지

- 3) 제14조 1, 2항, 21조 1항, 28조 1항 띄어쓰기 통일의 건
- 4) 제16장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직책 관련 회칙 명시의 건
- -선거시행세칙과의 통일화 및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을 위해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회칙으로 명시
- ①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중앙비상대책위원들 중 한명으로 구성된다.
- ②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재적인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.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과반 득표자가 선출된다.(단, 최다 득표수가 과반이 되

지 못함 경우 최저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고,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 한다.)

> ① 중앙비상대책위원장,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중앙비상대책위원들 중 **각각 한 명**으로 구성된다.

② 중앙비상대책위원장,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재적인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. **각 직책에서**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과반 득표자가 선출된다.(단, 최다 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못할 경우 최저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고,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 한다.)

[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관련 논의]

- 1) 제8조의 2, 4항 띄어쓰기의 건
- 2) 제10조 일부 개정의 건
- ① 단과대 및 학과(부)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각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에서 책임진다.
- > ① 단과대 및 학과(부) 선거관리위원회의 **구성과 역할은** 각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에서 책임진다.
- 3) '단과대' 단어 통일의 건
- > 총학생회 회칙, 선거시행세칙에서 '단과대학'으로 통일
- 4) 학과 > 학과(부) 통일의 건
- > 총학생회칙, 선거시행세칙에서 '학과/부'로 통일
- 5) 제23조 2항 부중앙선관위원장 명시의 건
- ②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중앙선관(부)위원장은 해당 참관인의 참관 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. 그리고 해당 투표소에는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.
- > ②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**부중앙선관위원장**은 해당 참관인의 참관 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. 그리고 해당 투표소에는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.
- 6) 부위원장 > 부중선관위원장 통일의 건

선거시행세칙에서 '부중선관위원장'으로 통일

- 7) 제65조 3항 일부 개정의 건해당 내용 중 65조(운영원칙)가 아닌 66조(조건) 부분이 문맥상 적합한 내용임.
- ③ 선거자금공영제도의 공정성 및 유용/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본은 공탁금 50만원씩을 중선관위에 위탁하고 당선공고와 함께 공탁금을 각 선본으로 반환한다. 단 65조에 위배되는 선거운동본부의 경우 이 공탁금은 중선관위에 의해 해당학기 학생회비에 포함된다.
- > ③ 선거자금공영제도의 공정성 및 유용/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본은 공탁금 50만원씩을 중선관위에 위탁하고 당선공고와 함께 공탁금을 각 선본으로 반환한다. 단 **66조**에 위배되는 선거운동본부의 경우 이 공탁

금은 중선관위에 의해 해당학기 학생회비에 포함된다.

8) 제64조 일부 개정의 건

총학생회 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하며 좋은 정책을 가진 모 선거운동비용 중 일부를 총학생회비에서 책정하는 방식이다.

- > 총학생회 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며 좋은 정책을 가진 선본의 선거운동비용 중 일부를 총학생회비에서 책정하는 방식이다.
- 9) '단~' 예외 조항 통일의 건

〉 검토 후 추후 논의

[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]

- *인권센터 자문
- 1) 제5조 일부 개정의 건
- -상대방의 의지에 반하거나 의지와 관계없는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
- *인권센터 자문 : 해당 조항은 성차별에 대한 조항

[논의 내용]

사과대 : 해당 회칙은 성폭력에 초점이 맞춰진 회칙으로, 회칙의 목적 부합 여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.

총 : 해당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회칙은 제1조(목적) 자체도 성폭력에 초첨이 맞춰져 있기에 개념상 혼재를 막기위해 해당 호는 삭제할 것을 제안

- > 제5조 2호 삭제
- 2) 제11조 4항 2호
- ④ 신고를 접수할지의 여부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하에 최종 접수자가 결정한다. 최종 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만 접수를 거부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
인권 침해: 사건 공론화 자체가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최종 접수자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최종 접수자에게 있다.

*인권센터 자문 : 최종 접수자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 존재

- > 공론화 거부의 권한이 최종 접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피해 당사자의 권한 명시는 인권센터 자문을 받은 후에 추후 논의
- 3) 조항호목 방식 적용의 건

> 전반적으로 검토 후에 추후 논의

- 4) 회칙명 일부 개정의 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
- >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칙

4 의결 안건

1.

재적단위	찬성	반대	기권	결과

5 기타 안건

1. 2학기 학생회비 배분 관련 논의

	금액	단위별	明光道	금액		비고	
전체	₩ 9,500	단과대	기본배정액	₩	4,400	단위별 납부 인원 ×4,400	
			역비율 환산액	₩	250	단위별 인원 역으로 환산하여 배정(적은 단위 금액 보장)	
			추가 배정액	₩	200	역비율시 소수 단위의 총액 역전현상 발생을 없애기 위해 하위 5개(납부 인원 순) 단과대 정비율 배정	
		중앙단위	종학생회	₩	3,520	중앙단위 80%	
			동아리연합회	₩	880	중앙단위 20%	
		전학대회비	2	₩	250	전체 납부인원 × 250	

특이사항이 없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기존대로 배분 예정

-인문대: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홍보 필요 > 총: 학생회비 추가 납부 안내 카드뉴스 발행 예정

2. 기타 건의사항



서울캠퍼스 65대 중앙운영위원회